

준비서면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집: 02-813-8913, 휴대폰:010-5590-8913)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1항, 2항(준비서면 기재사항) 및 제1심 민사소송절차 안내서(갑 제13호증)에 따라, 피고측 준비서면에(2006. 4. 7.)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변론 및 입증을 준비합니다.

피고주장 1. “먼저 교수지위확인을 구하는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 합니다.)의 청구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1) 특별법이 재임용 심사의 부당성 여부만을 다룰수 있다는 것만을 보장할 뿐이고 복직보장,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특별법이 부당재임용탈락교수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근거가 없고, (2) 헌법재판소의 2002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은 임용권자의 해고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이와달리 재임용권자의 해고자유 측면을 전제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기대권을 부인한 원심법원의 판단기준은 위헌,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반박변론1>

“원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라는 피고의 주장이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논리가 없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1항, 2항(준비서면 기재사항) 및 제1심 민사소송절차 안내서(갑 제13호증)에 어긋나는 답변입니다.

피고주장 2. “그리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4 가지 점에서 모두 판단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은 원고의 1심에서의 주장순서에 따라 조목조목 증거에 의한 사실안정과 지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는 구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불합치결정은 당연히 소급 적용이 인정되고, 위 결정의 취지가 임용권자의 해고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이고 개정신법은 위 취지에 따라 재정된 것이므로 단순한 절차상 하자 등도 위법한 것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원고의 연구실적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는 그 자체만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므로 원고의 재임용탈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부당하거나 주장자체로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반박변론2>

원고는,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2005. 10. 21. 제출)에서, 1심 판결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원고의 반박에 대하여, 피고는 논리적인 재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원고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부당하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이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1항, 2항(준비서면 기재사항) 및 제1심 민사소송절차 안내서(갑 제13호증)에 어긋나는 답변입니다.

피고주장 3. “또한 원고의 성적평가방법에 대한 원심법원의 사실인정에 대해 학칙에 근거규정이 없다거나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자의적으로 평가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반박변론3>

원고는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2005. 10. 21. 제출)에서, 학생평가의 근거자료

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자의적으로 평가했다”라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원고가 제출한 학생평가 자료의 어느 부분이 자의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지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의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근거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274조 1항, 2항(준비서면 기재사항) 및 제1심 민사소송절차 안내서(갑 제13호증)에 어긋나는 답변입니다.

피고주장 4. “그리고 원고의 책임용거부결정의 동기에 대해 원고가 3 가지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책임용탈락이 95 학년도 본고사 수학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임을 입증 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증거들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박반론4>

첫째: 증거의 객관성 결여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1항, 2항(준비서면 기재사항) 및 제1심 민사소송절차 안내서(갑 제13호증)에 어긋나는 답변입니다.

둘째: 3가지 증거들은, 피고가 작성 내지는 시인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용 탈락이 보복임을 피고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소 결론: 피고 자신의 실책을 덮으려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결론

항소장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민사소송법 제256조)와 준비명령(2005. 11. 18. 기한)을, 피고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제출된 답변서에서, ‘독단적이다’ ‘자의적이다’, ‘객관성을 결여했다’라는 근거 없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 피고는 아무런 증거자료

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논리적인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사소송법(제 146조, 적시제출주의; 제 149조,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 150조,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각하 시킴으로 써, 원고 승소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21일

위 원고 김명호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